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

◇ 제・개정 이유

○ 축산환경 여건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반영한 지정기준 마련을 통해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(주요 내용 1~3)

○ 축산농장 현장 및 축산환경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정기준 정비 (주요 내용 1, 2)

○ 내부 기준인 평가 및 심사절차를 지정 기준에 신설하여 신청자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함 (주요 내용 5)

○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며, 개정 이후 변화한 관련 제도 및 여건 등을 평가・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 신설 (주요 내용 4, 6)

※ 근거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6항 및 「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」 제7조

◇ 주요 내용

1. 가축의 관리 지정기준 정비 (제3조, 제8조)

○ 가축의 사육밀도가 「축산법」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점수 부여(제1호)

○ 축사 간의 거리 기준으로 "5m 이상"에서 "1m 이상"으로 변경(제2호)

○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 주기를 "연 1회 이상"에서 "3년에 1회 이상"으로 변경하고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(「먹는물 관리법」)에서 생활용수 기준(「지하수법」)으로 변경하며,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질

검사 의무를 면제(제6호, 제8조제1항)

○ 한육우·젖소 농장의 조사료포 확보 면적을 "유기 축산물" 인증기준의 최소기준으로 완화(제9호)

2. 환경보전 지정기준 정비 (제4조)

○ 축사 바닥의 톱밥 등 깔짚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는 프리스톨 축사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제2호)

3.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우대사항으로 신설 (제7조)

○ 저단백 및 저메탄 사료의 급이(제1호),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밀도보다 낮은 사육밀도의 유지(제2호),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·운영(제3호), 에너지 절약형 시설·장비의 설치·운영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(제4호), 재이용수 활용·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·운영이나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(제5호)을 하는 경우 우대

4.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(제3조, 제5조 및 제10조)

○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등 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

○ 제3조의 "먹는물 기준"을 "생활용수 기준"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 법령을 「먹는물관리법」에서 「지하수법」으로 변경

5. 평가 및 심사절차 신설 (제9조)

○ 지정 평가 및 심사절차 사항 규정

○ 축산환경관리원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

○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

6. 재검토 기한 신설 (제11조)

○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